특수 교육

**. . .장소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 학생 및 가족에 대한 특수교육 절차상 보호방침 공지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B, 연방 규정(Federal Regulations) 및 주 특수교육준거규칙(State Rules Governing Special Education) 하의 요건

### 2019년 2월 개정

### Glenna Gallo, M.S., M.B.A. OSPI 특수교육부 차관보

**작성:**

* **특수 교육**speced@k12.wa.us | 360-725-6075

## 목차

**일반 정보 6**

**개요 6**

**공지 대상 6**

**추가 정보 6**

**절차상 보호방침 공지 6**

**사전통지서 7**

**모국어 8**

**전자우편 8**

**부모 동의 – 정의 9**

**부모 동의 – 요건 9**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 9**

**정부보호대상자의 초기 평가를 위한 특별 규칙 10**

**초기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와 지속적 서비스에 대한 동의의 취소 10**

**재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 11**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당한 노력에 대한 증빙 서류 12**

**기타 동의 관련 정보 12**

**독립적 교육평가 13**

**정의 13**

**공공비용에 의한 IEE에 대한 부모 권리 13**

**부모가 실시한 평가 13**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의 평가 요청 14**

**학구 기준 14**

**정보 기밀 유지 정의 14**

**개인식별정보 15**

**부모에 대한 공지 15**

**접근권 15**

**접근 기록 16**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기록 16**

**정보 종류 및 위치 목록 16**

**수수료 16**

**부모의 요청에 의한 기록 정정 17**

**청문회 기회, 절차 및 결과 17**

**개인식별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18**

**개인식별정보 보호방침 18**

**정보의 파기, 보유 및 보관 18**

**특수교육 분쟁 해결 절차 19**

**중재 19**

**일반 19**

**중재자의 공정성 19**

**중재에 의한 합의 20**

**특수교육 시민 이의제기 조사와 적법절차 청문회 사이의 차이점 20**

**시민 이의제기 절차 20**

**이의제기 방법 21**

**이의제기 조사 21**

**조사, 시한 연장, 결정서 22**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22**

**특수교육 시민 이의제기와 적법절차 청문회 22**

**적법절차 청문회 23**

**일반 23**

**청문회 요청 23**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에 의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해야 할 통지 24**

**청문회 요청의 충분성 24**

**청문회 요청의 수정 24**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에 대한 학구의 대응 24**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 25**

**견본 양식 25**

**적법절차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의 학생 배치 25**

**분쟁 해결 26**

**분쟁해결회의 26**

**분쟁 해결 기간 27**

**30일 해결 기간의 조정 27**

**해결합의서 28**

**합의 검토 기간 28**

**공정한 적법절차 청문회 28**

**일반 28**

**행정법 판사(ALJ) 28**

**적법절차 청문회 주제 29**

**청문회 요청 시한 29**

**시한 적용의 예외 29**

**청문권 29**

**일반 29**

**추가적 정보 공개 30**

**청문회에서의 부모 권리 30**

**청문회 일정 및 편의성 30**

**청문회 결정 30**

**ALJ의 판결 30**

**해석 조항 31**

**별도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 31**

**자문위원회 및 일반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결정 공개 31**

**결정의 최종성과 이의제기 31**

**시민권리(소송 제기 기간 등) 31**

**일반 32**

**시한 32**

**추가적 절차 32**

**해석 원칙 32**

**변호사 수임료 32**

**일반 33**

**수임료 지급 판정 33**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 34**

**학교 담당자의 권한 34**

**사례별 판정 34**

**일반 35**

**추가적 권한 35**

**각종 서비스 35**

**징계 제명으로 인한 배치 변경 36**

**통지 36**

**발현 판정 37**

**문제 행동이 해당 학생 장애의 발현이라는 판정 37**

**특수 상황 37**

**정의 38**

**환경 결정 38**

**적법절차 청문회 징계 청문회 38**

**행정법 판사(ALJ)의 권한 39**

**지급 적법절차 청문회 중의 배치 39**

**아직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한 보호책 40**

**일반 40**

**징계 문제의 지식 기반 40**

**예외 40**

**지식 기반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조건 40**

**법 집행 및 사법 당국에의 의뢰와 그에 대한 동 당국의 대응 41**

**기록 송부 41**

**공공비용에 의한 학생 부모의 단독적 사립학교 배치의 요건 41**

**사립학교 배치에 대한 비용 배상 41**

**비용 배상에 대한 제한 42**

**자료 43**

## **일반 정보**

개요

장애인 학생의 교육에 관한 2004년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IDEA)에 의거하여, 학교는 여러분, 즉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부모에게 IDEA 및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규정에 따른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된 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교육 교육감 사무소(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 OSPI)은 특수교육 제공에 관한 주정부 규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워싱턴 행정법(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 - WAC) Chapter 392-172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09년 6월에 개정된 미국 교육부의 ‘절차상 보호방침 공지 견본(Model Procedural Safeguards Notice)’에 준한 것입니다.

공지 대상

공지 대상은 부모, 대리 부모 및 성인 학생입니다. ‘여러분’, ‘부모’ 및 ‘자녀’는 대리 부모 및 성인 학생에게도 적용되는 호칭입니다. 이 공지에 쓰인 ‘학구’에는 차터스쿨 및 기타 공공기관(교육서비스구, 교육서비스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

특수교육 서비스 및 절차상 보호방침에 관한 추가 정보는 해당 학구 교육청의 특수교육부장, 주 부모 훈련 및 정보 센터, ‘행동을 위한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목소리(Partnerships for Action Voices for Empowerment)’(워싱턴 Pave), OSPI 등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OSPI는 특수교육 문제에 관한 웹페이지를 [공교육 교육감 사무소 - 특수 교육](http://www.k12.wa.us/SpecialEd/default.aspx)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OSPI에는 여러분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의문을 풀어주는 프로그램 감독관과 특수교육에 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 연락 담당자가 이 있습니다. OSPI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교육부(Special Education), 전화: 360-725-6075, OSPI TTY 360-664-3631, 이메일: [speced@k12.wa.us](mailto:speced@k12.wa.us).

## 절차상 보호방침 공지

### 34 CFR §300.504; WAC 392-172A-05015

이 공지는 (1) 매 학년도에 한 번씩, (2) 초기 의뢰 시, 또는 여러분이 평가 신청을 할 때, (3) 학구에서 여러분으로부터 특정 학년도 최초의 특수교육 시민 이의제기를 접수했을 때, (4) 학구에서 여러분으로부터 특정 학년도 최초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를 접수했을 때, (5)   
배치 변경을 성립시키는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및** (6) 여러분이 요청할 때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상 보호방침 공지에는 여러분의 자녀를 공공비용으로 사립학교에 배치하는 단독적 배치, 특수교육 시민 이의제기 절차, 고지에 입각한 동의, IDEA Part B 규정의 Subpart E에 명시된 절차상 보호방침, IDEA Part B 규정의 Subpart F에 명시된 정보 제공의 기밀 유지 등에 관한 모든 절차상 보호방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구는 선택에 따라 이 공지를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부모에 대한 절차상 보호방침 공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서

### 34 CFR §300.503; WAC 392-172A-05010

여러분의 해당 학구는 여러분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전통지서’라고 하며, 이 문서는 여러분의 요청에 응하여 회의에서 내려지거나 학구에서 내린 결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학구는 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러나 그 결정을 집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여러분 자녀에 대한 판별, 평가, 배치, 또는 FAPE 제공의 개시 또는 변경을 제의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전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구에서 제의 또는 거부하는 것
* 학구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의 또는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 IEP 팀이 검토한 기타 선택안에 대한 설명과 그 선택안들이 기각된 이유
* 해당 조치의 근거로 쓰인 각각의 평가 절차, 진단, 기록 또는 보고에 대한 설명
*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타 요소에 대한 설명
* 초기 평가 및 재평가를 위하여 학구에서 실시하겠다고 제의하는 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
* 부모는 본 책자에 기술된 절차상 보호방침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진술
* 여러분에게 본 ‘절차상 보호방침 공지’ 책자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본 책자를 구하는 방법, 또는 동 책자의 동봉 **및**
* 이러한 절차상 보호방침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문의할 수 있는 곳

여러분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경우의 예:

* 학구에서 여러분 자녀에 대한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또는 학구에서 여러분 자녀에 대한 평가 또는 재평가를 거부할 경우
* 여러분 자녀의 IEP 또는 배치가 변경될 경우
* 여러분이 요청한 변경에 대하여 학구에서 거부할 경우
* 여러분이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학구에 보냈을 경우

사전통지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여러분의 모국어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다른 의사소통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소통 수단이 문어가 아닐 경우, 학구는 (1) 통지서가 구두로 번역되거나, 여러분의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한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도록 하고, (2) 여러분이 통지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3) 위의 (1) 및 (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모국어

### 34 CFR §300.29; WAC 392-172A-01120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과 관련하여 쓰일 때의 *모국어*는 다음을 뜻합니다:

1.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아동의 경우에는 그 아동의 부모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2. 특정 아동과의 모든 직접적 접촉(해당 아동의 평가 포함)에서 그 아동이 집 또는 학습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청각/시각 장애인, 또는 사용하는 문어가 없는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 전자우편

### 34 CFR §300.505; WAC 392-172A-05020

해당 학구에서 부모에게 이메일을 통한 문서 수신 선택안을 제공할 경우, 다음을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 사전통지서
2. 절차상 보호방침 공지 **및**
3.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에 관한 통지서

## 부모 동의 – 정의

### 34 CFR §300.9; WAC 392-172A-01040

*동의*는 다음을 뜻합니다:

1. 여러분은 여러분이 동의하는 특정 조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러분의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소통 수단(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으로 완전하게 제공받았습니다.
2. 여러분은 그 조치를 이해하고 그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며, 동의서에는 그 조치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향후 공개될 기록(있을 경우)과 공개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3. 여러분은 이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며 언제든지 이 동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에 동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동의 취소는 동의를 한 후와 취소하기 전에 시작된 조치를 취소(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 학구는 여러분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록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녀의 교육 기록을 정정(변경)할 의무가 없습니다.

## 부모 동의 – 요건

### 34 CFR §300.300; WAC 392-172A-03000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

여러분의 해당 학구는 제의된 평가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는 사전통지서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고지에 입각한 여러분의 동의서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 자녀의 특수교육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초기 평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학구는 여러분 자녀의 특수교육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초기 평가에 대한, 고지에 입각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는 학구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학구는 여러분에게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자녀가 공립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여러분이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거나 동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학구는 중재 또는 적법절차 청문회(본 공지의 후속 부분에 기술되어 있음)를 통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구에서 여러분 자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녀를 식별, 판별 및 평가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보호대상자의 초기 평가를 위한 특별 규칙

여러분 자녀가 정부보호대상자이고 여러분과 동거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자녀의 특수교육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초기 평가를 위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 합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2. 주법에 의거하여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권리가 말소되었을 경우, **또는**
3. 판사가 교육 관련 결정권을 여러분 외의 개인에게 부여했고, 그 사람이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서를 제공했을 경우

IDEA에서 쓰일 때의 *정부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아동을 뜻합니다:

1. 수양부모가 배정되지 않은 수양아동
2. 워싱턴주법에 의거하여 정부보호대상자로 간주되는 아동, **또는**
3.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또는 다른 주의 아동복지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수양부모가 있는 수양아동은 *정부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기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와 지속적 서비스에 대한 동의의 취소

여러분의 해당 학구는 고지에 입각한 여러분의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며, 여러분 자녀에게 최초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지에 입각한 여러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최초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서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동의서 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학구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중재 절차를 이용하거나, 여러분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법 판사의 판결을 받아내기 위하여 적법절차 청문회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최초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서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구는 여러분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학구는:

1. 여러분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 FAPE)’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2. 여러분의 동의를 요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여러분 자녀에 대한 IEP 회의를 열거나 IEP를 개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공하고 학구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특수교육 서비스 이용 자격을 유지합니다:

1. 자녀의 재평가 결과, 더 이상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날 경우,
2. 자녀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며 졸업할 경우,
3. 자녀가 만 21세가 되었을 경우(8월 31일 이후에 만 21세가 될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특수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또는**
4. 여러분이 특수교육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는 취소 요청서를 학구에 제출할 경우

해당 학구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개시한 후에 여러분이 지속적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취소할 경우, 해당 학구는 여러분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에 합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러분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사전통지서에는 여러분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날짜가 명시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1. 여러분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 FAPE)’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2.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녀에 대한 IEP 회의를 열거나 IEP를 개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구는 여러분의 취소 요청서를 기각하는 적법절차를 이용하거나 중재 절차를 이용하여 특수교육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에 대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구에서 여러분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면, 여러분 자녀는 더 이상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특수교육에 대한 동의를 취소한 후, 언제든지 여러분, 또는 여러분 자녀를 잘 아는 사람(학구 등)이 여러분 자녀에 대한 초기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

여러분 자녀에 대한 재평가의 일부로서 새로운 시험을 실시해야 할 경우, 해당 학구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없는 한 여러분 자녀를 재평가하기 전에 고지에 입각한 여러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1. 여러분 자녀의 재평가에 대한 여러분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2. 여러분이 응하지 않았다는 증거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재평가의 일부로서의 새로운 시험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학구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중재 절차를 이용하거나, 여러분 자녀의 재평가에 대한 여러분의 동의 거부를 기각하기 위한 적법절차 청문회를 이용하여 여러분 자녀의 재평가를 위하여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초기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학구에서 중재 또는 적법절차 청문회를 이용한 재평가 노력을 거부하더라도 IDEA의 Part B에 명시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당한 노력에 대한 증빙 서류

여러분의 해당 학구는 초기 평가에 대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 최초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험이 포함된 재평가를 실시하고, 초기 평가를 위하여 정부보호대상자의 부모를 찾아내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증빙 서류에는 해당 학구가 그러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전화 통화/시도 및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2. 여러분에게 발송된 통신문과 그에 대한 회신의 사본, **및**
3. 여러분의 자택/직장 방문 및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기타 동의 관련 정보

해당 학구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여러분 자녀의 평가/재평가의 일부로서 기존 자료를 검토할 경우, **또는**
2. 실시 전에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시험 또는 기타 평가를 여러분 자녀에게 실시할 경우

여러분 자녀를 자비로 사립학교에 등록했거나 홈스쿨링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여러분의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구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중재 절차를 이용하거나, 여러분의 동의 거부를 기각하기 위하여 적법절차 청문회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구는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부모에 의하여 사립학교에 배치된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등한 사립학교 서비스를 여러분 자녀가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 독립적 교육평가

### 34 CFR §300.502; WAC 392-172A-05005

여러분이 해당 학구에서 실시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독립적 교육평가(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 IE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IEE를 요청할 경우, 해당 학구는 IEE를 받을 수 있는 곳과 IEE에 적용되는 학구의 기준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의

* *독립적 교육평가*(IEE)는 여러분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학구에서 고용하지 않은, 자격 있는 시험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뜻합니다.
* *공공비용*은 학구에서 평가 비용 전액을 지불하거나 해당 평가가 무료로 제공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공비용에 의한 IEE에 대한 부모 권리

여러분이 해당 학구에서 실시한 여러분 자녀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용으로 자녀에 대한 IE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에 준합니다:

1. 여러분이 공공비용에 의한 자녀의 IEE를 신청할 경우, 해당 학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a) 여러분 자녀에 대한 학구의 평가가 적절함을 입증하거나 여러분이 받은 자녀의 평가가 학구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혹은** (b) 공공비용으로 IEE를 제공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2. 해당 학구에서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하여 여러분 자녀에 대한 학구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IEE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비용은 공공비용으로 충당되지 않습니다.
3.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IEE를 신청할 경우, 해당 학구는 왜 학구에 의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명을 요구하거나, 여러분 자녀에 대한 학구의 평가를 방어하기 위하여 공공비용에 의한 IEE 제공 또는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에 있어서 부당하게 오래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학구가 여러분 자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여러분이 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1회에 한하여 공공비용으로 자녀에 대한 IE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실시한 평가

공공비용으로 여러분 자녀에 대한 IEE를 받거나, 자비로 받은 IEE를 학구에 제출할 경우:

1. 해당 학구는 그 IEE가 학구의 IEE 기준에 부합될 경우 여러분 자녀에 대한 FAPE 제공에 관한 결정에서 그 IEE의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2. 여러분 또는 학구는 여러분 자녀에 관한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그 IEE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ALJ)의 평가 요청

ALJ가 적법절차 청문회의 일부로서 여러분 자녀의 IEE를 요청할 경우, 평가 비용은 공공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학구 기준

IEE가 공공비용으로 받은 것일 경우, 평가 장소 및 시험관의 자격 등의 평가 기준이 학구에서 평가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그 기준이 IEE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제외하고, 학구는 공공비용으로 IEE를 받는 것에 관하여 조건이나 시한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정보 기밀 유지 정의

### 34 CFR §300.611; WAC 392-172A-05180

IDEA는 여러분에게 자녀의 특수교육 기록에 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는 모든 학생의 교육 기록을 보호하는 법률인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 FERPA)에 의거한 여러분의 권리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정보 기밀 유지’*라는 제목 아래 쓰일 경우:

* *파기*는 특정 정보에서 개인식별자를 물리적으로 파기 또는 제거함으로써 그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 *교육 기록*은 34 CFR Part 99(1974년 가족교육권및개인정보보호법, 20 U.S.C. 1232g(FERPA) 시행규칙)에 명시된 ‘교육 기록’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록을 뜻합니다.
* *참여 기관*은 IDEA의 Part B에 의거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거나 정보의 출처가 될 수 있는 학구, 관청 또는 기관을 뜻합니다.

## 개인식별정보

### 34 CFR §300.32; WAC 392-172A-01140

*개인식별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뜻합니다:

1. 여러분 자녀의 성명, 부모의 성명, 또는 다른 가족의 성명
2. 여러분 자녀의 주소
3. 여러분 자녀의 사회보장번호, 학생번호 등의 개인식별자, **또는**
4. 여러분 자녀를 상당히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적 특징 또는 기타 정보의 열거

## 부모에 대한 공지

### 34 CFR §300.612; WAC 392-172A-05185

OSPI는 그 규정에 따라 개인식별정보의 기밀 유지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지를 합니다:

1. 워싱턴주 내 다양한 인구집단의 모국어로 이루어지는 공지의 범위에 대한 설명
2. 개인식별정보 유지 대상 아동, 필요한 정보의 종류, 워싱턴주에서 정보 수집에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정보 출처 포함), 정보의 용도 등에 대한 설명
3. 개인식별정보의 보관, 제3자에 대한 공개, 보유 및 파기에 관하여 학구에서 준수해야 할 정책 및 절차의 요약, **및**
4. 가족교육권및개인정보보호법(FERPA) 및 34 CFR Part 99에 명시된 그 시행규칙에 의거한 권리 등,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모 및 학생의 제반 권리에 대한 설명

위와 같은 내용은 주 전체 차원의 주요한 판별, 식별 또는 평가 활동(‘아동 발견’이라고도 함)이 개시되기 전에 신문을 통해 공지되거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공지되어야 하며, 이에 사용되는 언론매체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찾아내고, 판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활동을 주 전역의 부모에게 알리기에 적합한 구독자 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접근권

### 34 CFR §300.613-617; WAC 392-172A-05190–05210

여러분은 해당 학구에서 IDEA의 Part B에 의거하여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여러분 자녀의 교육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구는 IEP 관련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절차 청문회(분쟁해결회의, 징계 관련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 등)가 열리기 전에 불필요한 지연 없이 여러분의 자녀 교육 기록 검사 및 검토 요청에 응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요청한 날짜로부터 4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육 기록 검사 및 검토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여러분이 기록의 설명 및 해석에 관하여 합당한 요청을 할 경우, 학구로부터 적절한 답변을 들을 권리,
2. 기록의 사본을 받아 보지 않고는 기록을 효과적으로 검사 및 검토할 수 없을 경우, 학구에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 **및**
3. 대리인을 임명하여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하게 할 권리.

후견, 별거, 이혼 등의 문제에 적용되는 주법에 의거한 권한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통지를 받지 않은 한, 학구는 여러분이 자녀에 관한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접근 기록

각 학구는 IDEA의 Part B에 의거하여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되는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인의 성명, 접근이 허용된 날짜, 해당의 교육 기록 사용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구는 부모 또는 학구의 권한자의 접근 기록은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기록

특정 교육 기록에 2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 관한 정보만 검사 및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학구에서 다른 학생에 관한 개인식별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관하여 고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종류 및 위치 목록

여러분이 요청할 경우, 학구는 학구에서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각종 교육 기록의 종류 및 위치를 명시한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수료

학구는 IDEA의 Part B에 의거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작성한 기록 사본에 대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수수료는 여러분이 그러한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IDEA에 의거한 정보 검색에 대하여서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모의 요청에 의한 기록 정정

### 34 CFR §300.618 – §300.621; WAC 392-172A-05215

IDEA에 의거하여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되는 여러분 자녀의 교육 기록에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여러분 자녀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될 경우, 학구에 그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구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정정 여부를 여러분의 요청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합당한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청문회 기회, 절차 및 결과

학구에서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정정하기를 거부할 경우, 그러한 결정을 여러분에게 통지하고 학구에서 여는 청문회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교육 기록에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기록에 기재된 정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는 FERPA에 의거한 학구의 청문회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가 아닙니다.

청문회를 연 결과, 학구에서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해당 학생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할 경우, 학구는 그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정정하고 그 정정 내용을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연 결과, 학구에서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여러분 자녀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할 경우, 학구는 여러분이 해당 정보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거나 학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 진술서를 여러분 자녀의 교육 기록에 삽입할 권리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자녀의 기록에 진술서를 삽입하고자 할 경우:

1. 해당 기록 또는 이의가 제기된 부분이 유지되는 한, 학구는 그 진술서를 여러분 자녀의 기록의 일부로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2. 학구에서 여러분 자녀의 기록 또는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다른 기관에 공개할 경우, 그 진술서도 해당 기관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 개인식별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 34 CFR §300.622; WAC 392-172A-05225

여러분 자녀의 교육 기록에 기재된 정보의 공개가 FERPA에 의거하여 부모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않는 한, 개인식별정보를 다른 기관에 공개할 때는 사전에 여러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DEA의 Part B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참여 기관의 관리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 기관의 관리에게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그 자녀(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거주지 관할 학구에 등록할 생각이 없을 경우, 그 사립학교가 속한 학구의 관리와 자녀의 거주지 관할 학구의 관리 사이에 여러분 자녀에 관한 개인식별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질 때 사전에 여러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식별정보 보호방침

### 34 CFR §300.623; WAC 392-172A-05230

여러분의 해당 학구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할 때 그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학구의 관리 1명이 개인식별정보의 기밀 유지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IDEA의 Part B 및 FERPA에 의거하여 기밀 유지 관련 훈련 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학구는 공개 검사를 위하여, 개인식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 내 직원들의 성명 및 직위가 명시된 현황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정보의 파기, 보유 및 보관

### 34 CFR §300.624; WAC 392-172A-05235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된 개인식별정보가 여러분 자녀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구는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년, 출석 기록, 수료 과목, 최종 수료 학년, 수료 연도 등의 영구적 기록은 시한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록 보유에 관한 주법은 Chapter 40.14 RCW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구의 기록 보유 기간에 관한 규정은 워싱턴주 주무부(Secretary of State) 기록관리국(Division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에서 정합니다.

## 특수교육 분쟁 해결 절차

여러분은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참여자입니다. 이 참여는 자녀에 대한 초기 의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해당 학구는 여러분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치는 견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해당 학구가 견해 차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보다 공식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즉, 중재, 시민 이의제기, 공정한 적법절차 청문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중재

### 34 CFR § 300.506; WAC 392-172A-05060–05075

일반

중재 서비스는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이 있을 경우 여러분 자녀에 대한 판별, 평가, 교육 배치 및 FAPE 제공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과 학구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중재는 자발적인 것이며, 적법절차 청문회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IDEA의 Part B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기타 권리를 거부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회는 적시에 여러분과 학구에 편리한 장소에서 열립니다.

부모가 중재회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학구는 편리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와 만나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개발할 수도 있으며, 이 제3자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1. 워싱턴주 내에 있는 적절한 대안적 분쟁 해결 기관, 부모 훈련 및 정보 센터, 또는 지역사회 부모 자원 센터와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2. 여러분에게 중재의 효과를 설명해주고 그 이용을 권장합니다.

중재자의 공정성

중재는 자격을 갖추었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중재 기술을 훈련받은 개인에 의하여 실시됩니다. 이 사람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규도 잘 알아야 합니다. OSPI는 외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중재를 실시합니다. 이 기관은 중재자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는 무작위 배정, 교대 배정, 또는 기타 공정한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중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1) OSPI, 학구, 또는 중재 대상 아동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주정부 기관의 고용인은 중재자가 될 수 없으며, (2) 중재자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 상충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재회는 적시에 여러분과 학구에 편리한 장소에서 열립니다.

중재에 의한 합의

여러분과 학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할 권한이 있는 학구 대리인과 여러분이 서명한 중재합의서에 의하여 합의가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중재회에서의 협의는 기밀이며, 적법절차 청문회나 연방 법원 또는 워싱턴주 법원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재합의서 자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관할지역의 주 법원 또는 미국 지방법원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시민 이의제기 조사와 적법절차 청문회 사이의 차이점

IDEA의 Part B에 명시된 규정은 시민 이의제기와 적법절차 청문회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의제기는 학구, OSPI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Part B의 요건, 34 CFR Part 300에 명시된 연방 규칙, 또는 IDEA의 Part B를 집행하는 워싱턴주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OSPI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 이의제기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 해당 학구, 또는 이의제기에 대응하는 기타 기관이 제시한 위반 관련 정보에 입각하여 OSPI에서 조사합니다. 시민 이의제기는 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는 여러분 자녀의 판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와 관련되거나, 여러분 자녀에 대한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의 제공과 관련된 문제에 한하여 여러분 또는 해당 학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청문회는 독립 주정부 기관인 행정청문실(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에서 고용한 행정법 판사(ALJ)가 진행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에는 일반적으로 증인 증언과 증거 제출이 포함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은 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2년 내에 해야 합니다(허위진술 또는 정보 비공개에 대한 몇몇 예외 조항이 있음).

시민 이의제기 및 적법절차 청문회의 시한과 절차는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 시민 이의제기 절차

### 34 CFR §§300.151 – 300.153; WAC 392-172A-05025–05045

OSPI는 시민 이의제기 해결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워싱턴주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웹사이트에 시민 이의제기 관련 정보가 올려져 있습니다.

학구, OSPI, 또는 IDEA의 지배를 받는 기타 교육 관련 기관이 IDEA의 Part B, Part B를 집행하는 규정, 또는 상응하는 워싱턴주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OSPI), Special Education,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7200’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대상인 학구 또는 기타 기관에 이의제기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정 학구 또는 기타 기관이 IDEA의 Part B, Part B를 집행하는 규정, 또는 상응하는 워싱턴주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진술, 또는 해당 학구 또는 기타 기관이 중재 또는 분쟁 해결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진술,
* 해당 학구 또는 기타 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이의제기가 특정 학생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학생의 성명, 그리고 해당 학생이 노숙자일 경우 연락처 정보,
* 학생의 학교명,
* 구체적 사실이 기술된, 문제에 대한 설명,
* 이의제기서 제출 시점에 이의제기자가 알고 있었던 내용의 범위 안에서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 **및**
* 이의제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반 사례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의제기서가 OSPI에 접수된 날짜로부터 과거 1년 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OSPI는 여러분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견본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양식은 [OSPI – 특수 교육 – 시민 이의제기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및 요청 양식](http://www.k12.wa.us/SpecialEd/DisputeResolution/CitizenComplaint.aspx) 웹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제기 조사

OSPI는 이의제기서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조사를 하고 결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시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60일 동안 OSPI는 (1)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해당 학구에 요청하고, (2) 여러분 또는 이의제기자에게 이의제기서 상의 위반 혐의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3) OSPI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독립적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4)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한 후, 해당 학구 또는 기타 기관이 IDEA의 Part B와 관련된 요건을 위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독립적인 판정을 합니다.

조사, 시한 연장, 결정서

60일의 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특정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예외적 상황이 존재할 경우, **또는** (2) 여러분과 해당 학구가 중재 또는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을 통해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결정서는 여러분 또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사람과 해당 학구에 발송됩니다. 결정서에는 모든 혐의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혐의에 대하여 결정서에는 사실 확인, 최종적 결론, 결정의 근거, 그리고 실제로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의제기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시정 방안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OSPI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위반 사례 또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립니다:

1. 해당될 경우 금전적 배상, 또는 해당 학생의 필요에 적합한 기타 시정 조치 등, 그러한 서비스의 거부에 대한 시정의 방법, **및**
2. 장차 모든 학생에 대한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의 제공

특수교육 시민 이의제기와 적법절차 청문회

적법절차 청문회의 주제이기도 한 시민 이의제기가 접수되거나, 이의제기에 복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이 적법절차 청문회의 일부일 경우, OSPI는 이의제기 중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야(조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제기에 포함된 문제들 중 적법절차 청문의 일부가 아닌 문제는 이의제기 시한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의제기서에 제기된 문제가 이전에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일 경우, 그 청문회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며, OSPI는 해당 문제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의제기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OSPI는 특정 학구에서 적법절차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의제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 적법절차 청문회

### 34 CFR §§300.507 – 300.513; WAC 392-172A-05080–05125

일반

여러분 또는 해당 학구는 여러분 자녀에 대한 판별, 평가, 교육 배치 또는 FAPE 제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또는 여러분이 요청할 때, 학구는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귀하’에는 여러분의 변호사가 포함되며, 학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학구’에는 학구 측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청문회 요청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여러분 또는 해당 학구는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청서에는 아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쪽에서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했건, 여러분 또는 학구는 다음 주소로 OSPI 행정지원부(Administrative Resource Services)에 청문회 요청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Administrative Resource Services

Old Capitol Building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7200

이메일: [appeals@k12.wa.us](mailto:appeals@k12.wa.us)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학생 성명
2. 학생 거주지 주소
3. 학생의 학교명
4. 해당 학생이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일 경우, 학생의 연락처 정보,
5. 문제와 관련된 사실이 기술된,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 **및**
6. 요청 당시 여러분 또는 학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의 범위 안에서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에 의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해야 할 통지

여러분 또는 학구가 상대방에게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상기의 정보가 기재된 요청서 사본을 OSPI에 제출하기 전에는 적법절차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청문회 요청의 충분성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이 처리되기 위하여서는 그 내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충분*이란 요청서가 앞서 *청문회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기술된 내용 요건을 충족함을 뜻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을 받은 일방이 요청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15일 내에 ALJ 및 기타 관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ALJ는 불충분 통지를 받은 날짜로부터 5일 내에 해당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즉시 여러분과 학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청문회 요청의 수정

여러분 또는 학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청문회 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승인하고, 아래 기술된 분쟁해결회의를 통해 청문회 요청을 해결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부모가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했을 경우), **또는**
2. 적법절차 청문회가 열리기 최소 5일 전에 청문회 담당관이 요청서 수정을 허락할 경우

여러분이 청문회를 요청한 일방이고 여러분이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를 수정할 경우, 분쟁해결회의 일정 및 분쟁 해결 기간(*분쟁 해결* 참조)은 수정된 요청서가 접수된 날짜, 또는 ALJ가 청문회 요청을 허락한 날짜에 개시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에 대한 학구의 대응

여러분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에 명시된 주제에 관하여 학구에서 여러분에게 사전통지서(*사전통지서*라는 제목 아래 기술되어 있음)를 발송하지 않았을 경우,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10일 내에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1. 학구에서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에 제시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의하거나 취하기를 거부한 이유에 대한 설명
2. 여러분 자녀의 IEP 팀이 검토한 기타 선택안에 대한 설명과 그 선택안들이 기각된 이유
3. 학구에서 제의 또는 거부한 조치의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진단,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 **및**
4. 학구에서 제의 또는 거부한 조치와 관련된 기타 요소에 대한 설명

학구는 여러분에게 위 1-4항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

징계를 위하여 신속하게 열리는 적법절차 청문회(*징계를 위한 적법절차 청문회* 단원에 기술되어 있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를 접수한 일방은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상대방에게 요청서에 명시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라도 여전히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견본 양식

### 34 CFR §300.509; WAC 392-172A-05085

OSPI는 여러분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을 돕기 위하여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 견본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양식은 [OSPI – 특수 교육 –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 – 자주 묻는 질문 및 요청 양식](http://www.k12.wa.us/SpecialEd/DisputeResolution/DueProcess.aspx) 웹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이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에 모든 필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 청문회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가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구의 특수교육부로부터 청문회 요청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적법절차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의 학생 배치

### 34 CFR §300.518; WAC 392-172A-05125

*장애인 학생 징계 절차*라는 제목 아래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 해결 기간 중에, 공정한 적법절차 청문회 또는 ALJ의 판결에 대한 항소 재판의 판결을 기다릴 동안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가 일단 상대방에게 발송되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과 학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교육 배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에 공립학교 최초 입학 신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여러분 자녀는 위와 같은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여러분의 동의에 의하여 일반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IDEA의 Part C에 의거한 서비스를 받다가 IDEA의 Part B에 의거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중이며, 만 3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Part C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여러분 자녀에 대한, IDEA의 Part B에 의거한 초기 서비스 제공이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학구는 여러분 자녀가 그동안 받아온 Part C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IDEA의 Part B에 의거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되고, 자녀가 최초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동의할 경우, 법적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구는 여러분과 학구 사이에 분쟁이 되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ALJ가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배치에 관한 이 결정은 적법절차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될 동안의 배치에 대한 여러분과 학구 사이의 합의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 34 CFR §300.510; WAC 392-172A-05090

분쟁해결회의

여러분이 학구 및 OSPI에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내에 학구는 여러분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에 기재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담당 IEP 팀 구성원(들)과 여러분과의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학구가 중재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분쟁해결회의를 보류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회의는 적법절차 청문회 일정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회의에는:

1. 학구를 대리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학구 대리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2. 여러분이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는 한 학구 측 변호사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학구에서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과 이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입니다. 담당 IEP 팀 구성원의 분쟁해결회의 참석은 여러분과 학구가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해결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여러분과 학구가 회의를 보류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또는**
2. 여러분과 학구가 중재(*중재*라는 제목 아래 기술되어 있음)를 이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분쟁 해결 기간

여러분이 학구 및 OSPI에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학구에서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을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 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45일의 최종결정서 발급 시한은 30일간의 분쟁 해결 기간이 종료될 때 시작되며, 아래 기술된 바와 같이 30일간의 분쟁 해결 기간이 조정되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러분과 학구가 분쟁해결회의를 보류하거나 중재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분쟁해결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이 회의에 참석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분쟁 해결 및 적법절차 청문회 일정이 연기됩니다.

학구에서 여러분의 분쟁해결회의 참석을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하고 그러한 노력을 문서화한 후에도 여러분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구는 30일간의 분쟁 해결 기간이 종료될 때 ALJ에게 여러분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을 기각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구는 쌍방이 합의한 분쟁해결회의 시간 및 장소를 정하기 위한 노력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1. 전화 통화/시도 및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2. 여러분에게 발송된 통신문과 그에 대한 회신의 사본, **및**
  3. 여러분의 자택/직장 방문 및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여러분이 학구 및 OSPI에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15일 내에 학구에서 분쟁해결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또는** 학구에서 분쟁해결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ALJ에게 45일간의 적법절차 청문회 일정의 시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해결 기간의 조정

여러분과 학구가 분쟁해결회의를 보류하기로 합의할 경우, 그 다음날 45일간의 적법절차 청문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중재 또는 분쟁해결회의가 개시된 후, 그리고 30일간의 분쟁 해결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여러분과 학구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그 다음날 45일간의 적법절차 청문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30일간의 분쟁 해결 기간이 종료된 후 여러분과 학구가 중재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을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중재를 계속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중재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45일간의 적법절차 청문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해결합의서

여러분과 학구가 분쟁해결회의에서 분쟁을 해결했을 경우, 쌍방은 다음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여러분과 학구 대리 권한이 있는 학구 대리인이 **서명하고,**
2. 관할지역 내 워싱턴주 고등법원 또는 미국 지방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합의서

합의 검토 기간

여러분과 학구가 분쟁해결회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쌍방 중 어느 일방이라도 합의서에 서명한 시점으로부터 3일 내에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적법절차 청문회

### 34 CFR §300.511; WAC 392-172A-05080–05095

일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가 제출되면 언제든지, 분쟁 당사자인 학구 또는 여러분에게 공정한 적법절차 청문회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ALJ)

청문회는 행정청문실(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 OAH)에서 고용한, 자격 있는 독립적 행정법 판사(ALJ)가 진행합니다.

ALJ는 최소한:

1. OSPI, 또는 해당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에 관여하는 학구의 고용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ALJ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관의 고용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2. 청문회에서의 ALJ의 객관성과 상충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3. IDEA 조항, IDEA와 관련된 연방 및 주 규정, IDEA에 대한 연방 및 주 법원의 법률적 해석 등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4. 적절한 표준 법률실무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고 문서화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각 학구는 ALJ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의 명단을 유지해야 하며, 이 명단에는 각 ALJ의 자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ALJ 명단은 OSPI 웹사이트에서도 유지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 주제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하는 일방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 요청 시한

여러분 또는 학구는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에 제기된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 또는 학구가 알게 되었거나 마땅히 알게 되었을 날짜로부터 2년 내에 동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한 적용의 예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위의 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여러분이 청문회 요청서에 제기하는 문제 또는 사안을 해결했다고 학구에서 명백한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또는**
2. 학구에서 IDEA의 Part B에 의거하여 여러분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 청문권

### 34 CFR §300.512; WAC 392-172A-05100

일반

여러분은 적법절차 청문회(징계 관련 청문회 포함)에서 여러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학구는 적법절차 청문회(징계 관련 청문회 포함)의 쌍방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고, 장애인 학생의 문제에 관한 특수 지식이 있거나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을 동반하여 그 사람의 조언을 받을 권리
2.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대면하고, 증인에게 반대심문을 하고,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권리
3. 청문회가 열리기 최소 5일 전에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청문회에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4. 청문회에 대한 축어적 기록(선택에 따라 문서 기록 또는 전자 기록)을 획득할 권리, **및**
5. 사실 확인 및 결정에 대한 기록(선택에 따라 문서 기록 또는 전자 기록)을 획득할 권리

추가적 정보 공개

적법절차 청문회가 열리기 최소 5일 전에, 여러분과 학구는 그날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 그리고 여러분 또는 학구가 청문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평가에 입각한 권장안을 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ALJ는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청문회에서 관련 평가 또는 권장안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의 부모 권리

여러분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 여러분 자녀를 출석시킬 권리
2. 청문회를 일반에 공개할 권리, 및
3. 청문회, 사실 확인 및 결정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도록 할 권리

## 청문회 일정 및 편의성

### 34 CFR §300.515; WAC 392-172-05110

30일간의 분쟁해결회의 기간이 종료된 후 45일 내, **또는** 조정된 분쟁 해결 기간이 종료된 후 45일 내에:

1. 청문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며,
2. 각 당사자에게 결정서 사본이 우송됩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요청할 경우, ALJ는 위에 기술된 45일간의 기간을 초과하는 특정한 시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문회는 여러분과 자녀에게 합당할 만큼 편리한 시간 및 장소에 열려야 합니다.

## 청문회 결정

### 34 CFR § 300.513; WAC 392-172-05105

ALJ의 판결

여러분 자녀가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ALJ의 판결은 실질적인 근거에 입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학구가 절차상 위반을 했다고 여러분이 청문회에서 주장할 경우, ALJ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여러분 자녀가 FAPE를 받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1. 절차상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FAPE에 대한 여러분 자녀의 권리가 저해되었을 경우
2. 절차상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FAPE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심각하게 저해되었을 경우, **또는**
3. 절차상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교육적 이익이 박탈되었을 경우

해석 조항

ALJ가 FAPE 위반 사례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도 ALJ는 학구에 대하여 IDEA의 Part B(34 CFR §§300.500 – 300.536)에 의거하여 연방 규정 중 절차상 보호방침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

여러분은 이미 요청한 적법절차 청문회와 별개의 문제에 관한 별도의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및 일반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결정 공개

OSPI는 개인식별정보를 모두 삭제합니다:

1. 적법절차 청문회의 조사 결과 및 결정을 워싱턴주 특수교육자문위원회(Special Education Advisory Committee - SEAC)에 제출 **및**
2. 동 조사 결과 및 결정을 일반에 공개

## 결정의 최종성과 이의제기

### 34 CFR §300.514; WAC 392-172A-05115

적법절차 청문회(징계 관련 청문회 포함)에서 내려진 결정은 청문회의 쌍방 중 어느 일방(여러분 또는 학구)이 아래 서술된 바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동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최종적입니다.

## 민사소송 - 소송 제기 기간 등

### 34 CFR §300.516; WAC 392-172A-05115

일반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적법절차 청문회(징계 관련 청문회 포함)의 조사 결과 및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일방은 적법절차 청문회의 주제였던 문제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은 관할지역의 워싱턴주 법원(이런 종류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주 법원) 또는 미국 지방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은 IDEA의 Part B에 의거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분쟁 금액에 상관없이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시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방은 ALJ의 판결 날짜로부터 **90일**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추가적 절차**

모든 민사소송에서 해당 법원은:

1. 행정심판 기록을 접수하고
2. 여러분의 요청 또는 학구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 증거를 심리 **및**
3. 증거의 우월성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리고,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책을 승인합니다.

해석 원칙

IDEA의 Part B에는 미국 헌법,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Title V(Section 504), 또는 장애인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 법률에 의거한 권리, 절차 및 처리를 한정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률에 의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목적이 IDEA의 Part B에 의거해서도 가능한 구제책을 추구하는 것일 경우, IDEA의 Part B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필요할 정도만큼 상기의 적법절차 청문회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IDEA에 의거하여 가능한 구제책과 동일한 구제책을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획득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다른 법률에 의거한 구제책을 획득하기 위하여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으로 직행하기 전에 먼저 공정한 적법절차 청문회를 이용하여 IDEA에 의거한 구제책을 획득해야 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

### 34 CFR §300.517; WAC 392-172A-05120

일반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법원은 그 재량에 따라 소송비의 일부로서 합당한 변호사 수임료를 여러분에게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IDEA의 Part B에 의거하여 제기된 소송 또는 법적 절차에서, 여러분의 변호사가 (a)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경솔하거나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는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했거나,** (b) 동 소송이 명백히 경솔하거나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도 계속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해당 법원은 그 재량에 따라 여러분의 변호사에게 소송비의 일부로서 합당한 변호사 수임료를 승소한 학구 또는 OSPI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IDEA의 Part B에 의거하여 제기된 소송 또는 법적 절차에서, 여러분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 또는 그 후의 소송이 괴롭힘, 불필요한 지연, 소송 또는 법적 절차 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등의 부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법원은 그 재량에 따라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변호사에게 소송비의 일부로서 합당한 변호사 수임료를 승소한 학구 또는 OSPI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수임료 지급 판정

변호사 수임료는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및 품질에 대한 보수로서 소송 또는 청문회가 발생한 지역사회의 일반적 요율에 입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임료 지급 계산에서 상여금 또는 승수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IDEA의 Part B에 의거하여 제기된 소송 또는 법적 절차에서, 여러분에게 해결제의서가 발송된 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지급 판정 대상이 아니며 관련 비용도 배상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의가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68규칙에 명시된 시한 내, 또는 적법절차 청문회 및 주 차원 심의의 경우 그 개시 전 최소 10일 전에 이루어질 경우,
2. 제의가 10일 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및
3.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획득한 구제책이 해결 제의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해당 법원 또는 ALJ가 판정할 경우

위와 같은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승소하고, 여러분이 해결 제의를 거절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당한 것일 경우, 법원은 여러분에게 변호사 수임료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인하여 IEP 팀 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아닌 한, IEP 팀 회의와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는 지급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적법절차 청문회로 인하여 열리는 분쟁해결회의는 행정 청문회 또는 소송으로 인하여 열리는 회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목적으로 한 행정 청문회 또는 소송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정할 경우, 법원은 IDEA의 Part B에 의거한 변호사 수임료 지급 판정 금액을 적절하게 삭감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또는 법적 절차 중에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변호사가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했을 경우
2. 변호사 수임료 금액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기술, 명성 및 경험이 대등한 변호사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에 대한 동 지역사회의 일반적 시간급 요율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3. 소송 또는 법적 절차의 성격을 감안할 때, 소요된 시간과 제공된 법률 서비스가 과도할 경우, **또는**
4. 여러분의 변호사가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라는 제목 아래 기술된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 통지서에서 해당 학구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나 워싱턴주 또는 학구에서 소송 또는 법적 절차의 최종적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했거나, IDEA의 Part B에 명시된 절차상 보호방침 조항에 의거한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법원에서 판정할 경우, 법원은 수임료를 삭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

여러분 자녀가 징계를 받을 경우, 특수교육 보호책이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이 보호책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징계 절차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보호책은 학구에 의하여 마땅히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별되지 않은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 학교 담당자의 권한

### 34 CFR §300.530; WAC 392-172A-05145

사례별 판정

학교 담당자는 징계에 관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배치 변경이 학교의 학생 행동강령을 위반한 여러분 자녀에게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사례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여러분 자녀가 학생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학교 담당자는 연속 **10 수업일** 이하의 기간 동안 여러분 자녀를 현재의 배치로부터 적절한, 잠정적인 대안적 교육 환경으로 옮기거나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처분은 비장애인 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담당자는 별개의 비행에 대하여 동일 학년도에 연속 **10 수업일** 이하의 기간 동안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명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제명 조치에 의하여 배치 변경이 성립되지 않아야 합니다(아래의 *징계 제명으로 인한 배치 변경*에서 정의 참조).

여러분 자녀가 동일 학년도에 총 **10 수업일** 동안 현재의 배치에서 제명되었을 경우, 해당 학구는 해당 학년도에서의 추가적 제명 기간 동안 아래의 각종 *서비스*라는 제목 아래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 권한

학생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동이 여러분 자녀의 장애의 발현이 아니고(아래의 *발현 판정* 참조) 징계를 위한 배치 변경이 연속 **10 수업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학교 담당자는 비장애인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동일한 기간 동안 여러분 자녀에게 징계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학교는 아래의 *각종 서비스*라는 소제목 아래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여러분 자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여러분 자녀의 IEP 팀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제공될 서비스를 위한 잠정적인 대안적 교육 환경을 결정합니다.

각종 서비스

여러분 자녀가 현재의 배치에서 제명되었을 경우, 여러분 자녀에게 제공되어야 할 각종 서비스는 잠정적인 대안적 교육 환경에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해당 학년도에 총 **10 수업일 이하**의 기간 동안 현재의 배치에서 제명되었을 경우, 학구는 유사한 이유로 제명된 비장애인 학생에게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여러분 자녀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해당 학년도에 총 **10 수업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현재의 배치에서 제명되었을 경우:

1. 여러분 자녀는 비록 다른 환경에서이지만 일반적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본인의 IEP에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계속 진전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또한,**
2. 여러분 자녀의 문제 행동이 장애의 발현이었을 경우, 여러분 자녀는 적절한 기능적 행동평가를 받고, 문제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중재 서비스 및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동일 학년도에 총 **10 수업일** 동안 현재의 배치에서 제명되었고 현재의 제명 기간이 연속 **10 수업일** 이하일 **경우**, **또한** 현재의 제명에 의하여 배치 변경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아래의 정의 참조), 학교 담당자는 여러분 자녀의 담당 교사 중 최소 1명과 협의하여, 여러분 자녀가 비록 다른 환경에서이지만 일반적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본인의 IEP에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계속 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제명에 의하여 배치 변경이 성립될 경우(아래의 정의 참조), 여러분 자녀의 IEP 팀은 여러분 자녀가 비록 다른 환경에서이지만 일반적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본인의 IEP에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계속 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 징계 제명으로 인한 배치 변경

### 34 CFR §300.536; WAC 392-172A-05146 – WAC 392-172A-0515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교육 배치에서의 제명에 의하여 **배치 변경**이 성립됩니다:

1. 제명 기간이 연속 10일(수업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또는**
2. 여러분 자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정한 유형을 나타내는 일련의 제명 처분을 받았을 경우:
   1. 일련의 제명 처분의 총 기간이 한 학년도에 10일을 초과하고,
   2. 여러분 자녀의 행동이 과거에 일련의 제명 처분의 원인이 된 사례들에서의 행동과 상당히 **유사하며,**
   3. 각 제명 처분의 기간, 총 제명 기간, 각 제명 처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의 추가적 요소가 고려될 경우

해당 학구는 일련의 제명 사례의 유형에 의하여 사례별 배치 변경이 성립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여러분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지

학구에서 학생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여러분 자녀의 배치 결정이 성립되는 제명 결정을 내릴 경우, 학구는 그 날짜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제명 결정을 통지하고 절차상 보호방침 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현 판정

학생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여러분 자녀의 배치 결정(*징계 제명으로 인한 배치 변경* 참조)이 내려진 날짜로부터 **10 수업일** 내에 해당 학구, 그리고 여러분과 학구가 함께 정한 담당 IEP 팀 구성원들은 여러분 자녀의 IEP, 교사의 견해, 여러분이 제공한 관련 정보 등, 여러분 자녀의 파일에 포함된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판정해야 합니다:

1. 문제의 행동이 여러분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또는 동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또는**
2. 문제의 행동이 학구에서 여러분 자녀의 IEP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인지의 여부

여러분이 포함된 여러분 자녀의 담당 IEP 팀 구성원들이 위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정할 경우, 문제의 행동은 여러분 자녀의 장애의 발현으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행동이 학구에서 여러분 자녀의 IEP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상기 집단이 판정할 경우, 학구는 즉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 행동이 해당 학생 장애의 발현이라는 판정

문제의 행동이 여러분 자녀의 장애의 발현이었다고 여러분이 포함된 상기 집단이 판정할 경우, 그 IEP 팀은:

1. 배치 변경의 원인이 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학구에서 기능적 행동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 기능적 행동평가를 실시하고 행동중재 계획을 **시행하거나,**
2. 행동중재 계획이 이미 개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행동중재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분 자녀의 행동에 적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특수 상황*이라는 소제목 아래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학구는 쌍방(여러분과 학구)이 행동중재 계획 수정의 일부로서의 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여러분 자녀를 제명 이전의 배치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특수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학교 담당자는 여러분 자녀의 문제 행동이 장애의 발현이었건 아니건 여러분 자녀를 최고 45일(수업일 기준) 동안 잠정적인 대안적 교육 환경(해당 학생의 IEP 팀에서 정함)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1.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무기(아래의 정의 참조)를 가져오거나 학교, 학교 구내, 또는 해당 학구에서 관할하는 학교 행사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2. 여러분 자녀가 학교, 학교 구내, 또는 해당 학구에서 관할하는 학교 행사에서 고의로 불법 약물(아래의 정의 참조)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아래의 정의 참조)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청할 경우, **또는**
3. 여러분 자녀가 학교, 학교 구내, 또는 해당 학구에서 관할하는 학교 행사에서 타인에게 중상해(아래의 정의 참조)를 입혔을 경우

정의

* *규제 약물*은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812(c)) 제202(c)조의 표 I, II, III, IV 및 V에 명시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뜻합니다.
* *불법 약물*은 규제 약물을 뜻하지만 면허를 소지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감독 아래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되거나, 규제약물법 또는 연방법의 기타 조항에 의거한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되는 규제 약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상해*는 실질적 사망 위험, 극도의 신체적 고통, 명백한 장기적 외모 손상, 신체 부위/장기/기능의 장기적 상실 또는 손상 등이 수반되는 상해를 뜻합니다.
* *무기*는 사망 또는 중상해를 유발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망 또는 중상해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생물성 및 무생물성 무기, 기구, 도구, 재료 또는 물질을 뜻합니다. 단, 칼날의 길이가 2.5인치 미만인 주머니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환경 결정

### 34 CFR § 300.531; WAC 392-172A-05145; WAC 392-172A-05149

담당 IEP팀은 **배치 변경**을 성립시키는 제명 조치, 그리고 위의 ***추가적 권한*** 및 ***특수 상황***이라는 제목 아래 기술된 제명 조치에 대한 잠정적인 대안적 교육 환경을 결정해야 합니다.

## 배치 결정 및 발현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 (적법절차 청문회 징계 청문회)

### 34 CFR § 300.532; WAC 392-172A-05160

여러분은 다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징계 조항에 의거하여 내려진 배치 관련 결정, **또는**
2. 위에 기술된 발현 판정

학구는 여러분 자녀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면 여러분 자녀 또는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적법절차 청문회**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행정법 판사(ALJ)의 권한

ALJ는 적법절차 청문회를 실시하여 판결을 해야 합니다. ALJ는:

1. 여러분 자녀에 대한 제명 조치가 *학교 담당자의 권한*이라는 제목 아래 기술된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거나 여러분 자녀의 행동이 장애의 발현이라고 판정할 경우, 여러분 자녀를 제명 이전의 배치로 복귀시킵니다. **또는,**
2. 여러분 자녀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면 여러분 자녀 또는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할 경우, 여러분 자녀를 최고 45일(수업일 기준) 동안 적절한, 잠정적인 대안적 교육 환경으로 옮기는 배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원래의 배치로 복귀시키면 여러분 자녀 또는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학구에서 판단할 경우, 이 청문회는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학구가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 그 요청은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 절차 및 적법절차 청문회*라는 제목 아래 기술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청문회 요청일로부터 **20** 수업일 내에 열려야 할 경우. ALJ는 청문회가 열린 후 **10** 수업일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 여러분과 학구가 회의를 보류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중재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OSPI 및 학구에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7일** 내에 분쟁해결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쌍방이 만족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 또는 학구가 지급 적법절차 청문회(징계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에 대하여 OSPI는 증거 제출 시한을 **2일**(평일 기준)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지급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여러분 또는 학구는 징계가 그 목적이 아닌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위의 *이의제기* 참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적법절차 청문회 중의 배치

### 34 CFR §300.533; WAC 392-172A-05165

여러분 또는 학구가 징계 문제에 관한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했을 경우, 여러분과 학구가 다른 해결안에 합의하지 않는 한 여러분 자녀는 청문회 담당관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제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둘 중 더 빠른 날짜가 적용됨) 잠정적인 대안적 교육 환경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학교 담당자의 권한* 참조).

## 아직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한 보호책

### 34 CFR §300.534; WAC 392-172A-05170

일반

여러분 자녀가 아직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 자녀를 평가하여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정했어야 한다는 것을 학구에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여러분은 자녀의 절차상 보호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문제의 지식 기반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을 경우, 여러분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학구에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여러분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해당 학구의 감독자 또는 행정 담당자, 또는 여러분 자녀의 교사에게 서면으로 우려를 표명했을 경우
2. 여러분이 IDEA의 Part B에 의거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이용 자격과 관련된 평가를 요청했을 경우, **또는**
3. 여러분 자녀의 교사, 또는 학구의 기타 담당자가 여러분 자녀의 행동양식에 관한 구체적 우려를 학구의 특수교육부장 또는 기타 감독자에게 직접 표명했을 경우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구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평가를 허락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부했을 경우, **또는**
2. 여러분 자녀가 평가를 받았지만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되지 않았을 경우

지식 기반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조건

*징계 문제의 지식 기반* 및 *예외*라는 소제목 아래 기술된 바와 같이 학구에서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내리기 전에 여러분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몰랐을 경우, 여러분 자녀는 동일한 종류의 행동을 한 비장애인 학생에게 적용되는 징계 조치를 똑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는 학구가 여러분 자녀에 대한 징계 조치의 기간 동안 여러분 자녀의 평가를 요청할 경우, 그 평가는 신속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여러분 자녀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정학 또는 퇴학 등, 학교 당국이 정한 교육 배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학구에서 실시한 평가를 통해 입수된 정보와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학구는 여러분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에 기술된 징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 집행 및 사법 당국에의 의뢰와 그에 대한 동 당국의 대응

### 34 CFR §300.535; WAC 392-172A-05175

IDEA의 Part B는:

1. 특수교육 대상인 여러분 자녀가 범한 범죄를 학구에서 관계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2. 여러분 자녀가 범한 범죄에 대한 연방법 및 주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워싱턴주의 법 집행 및 사법 당국에서 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기록 송부

여러분 자녀가 범한 범죄를 학구에서 보고할 경우:

1. 학구는 여러분 자녀의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이 관계당국에 의하여 범죄 신고 기관에 참고용으로 송부되도록 해야 **하며,**
2. FERPA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 자녀의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 FAPE가 쟁점이 될 경우 공공비용에 의한 학생 부모의 단독적 사립학교 배치의 요건

### CFR § 300.148; WAC 392-172A-04115

해당 학구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여러분이 학구의 동의 없이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할 경우, 사립학교 교육에 대하여 학구에 배상을 청구하려면 특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립학교 배치에 대한 비용 배상

여러분 자녀가 이전에 해당 학구로부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고, 여러분이 학구의 동의 또는 의뢰 없이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등록하고자 할 때, 법원 또는 ALJ는 그러한 사립학교 등록 이전에 해당 학구에서 적시에 여러분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립학교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구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육 비용을 여러분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ALJ는 그러한 배치가 모든 학구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워싱턴주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도 여러분의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배상에 대한 제한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비용 배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삭감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a) 여러분이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자퇴시키기 전에 참석한 최근 IEP 회의에서 여러분의 우려를 표명하고, 자녀를 공공비용으로 사립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고, 여러분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겠다는 학구의 배치 제의를 거절한다는 것을 IEP 팀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또는 (b)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자퇴시키기 최소 10일(평일 기준 – 평일과 겹치는 공휴일 포함) 전에 그러한 정보를 학구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2. 여러분이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자퇴시키기 전에 학구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를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했지만(적절하고 합리적인 평가 목적에 대한 설명 포함)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 평가를 받도록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3. 법원에서 여러분의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나 비용 배상은:

1. (a)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통지를 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b) 여러분이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통지 의무에 대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을 경우, 또는 (c)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면 여러분 자녀가 신체적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통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삭감되거나 거부될 수 **없으며,**
2. (a) 여러분이 문식력이 없거나 영어로 글을 쓸 줄 모를 경우, 또는 (b)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면 여러분 자녀가 심각한 정신적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법원 또는 ALJ의 재량에 따라 통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삭감되거나 거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

절차상 보호방침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구 또는 OSPI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OSPI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

360-725-6075

[speced@k12.wa.us](mailto:speced@k12.wa.us)

[OSPI - 특수 교육 웹페이지](http://www.k12.wa.us/SpecialEd/default.aspx)

[OSPI - 특수 교육 - 가족 웹페이지](http://www.k12.wa.us/SpecialEd/Families/Assistance.aspx)

아래의 정부 지원 단체는 워싱턴주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줄 수도 있습니다:

[Partnerships for Action Voices for Empowerment(PAVE)](http://www.wapave.org/)

6316 So. 12th St.

Tacoma, WA 98465

(800) 5-PARENT (v/tty)

이메일: [pave@wapave.org](mailto:pave@wapave.org)

웹사이트: Partnerships for Action Voices for Empowerment(PAVE)

| **Creative Commons** |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공교육 교육감 사무소(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http://www.k12.wa.us/)**에 의한 이 작업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어트리뷰트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에 의해 허가되었습니다.** |
| --- | --- |

**OSPI 직원, 수령자 또는 계약자가 작성하지 않은 본 발행물의 모든 요소(이미지, 차트, 본문 등)의 사용에 대한 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권한은 저작권자가 지정한 방식의 속성 설명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요소는 OSPI 공개 라이선스에 대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 중 하나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SPI 인터랙티브 저작권 및 라이선스 가이드**](http://www.surveygizmo.com/s3/2689472/CopyrightLicensingGuid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SPI는 성별, 인종, 신조, 종교, 피부색, 출신국, 연령, 명예제대 참전용사 또는 군인 신분, 성별 표현 또는 성 정체성 등의 성적 지향, 지각장애/정신장애/신체장애, 장애인의 안내견 또는 도우미 동물 이용 등에 근거한 차별 없이 모든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하여 평등한 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차별 혐의에 관한 질문 및 항의는 평등및공민권실장(Equity and Civil Rights Director)에게 하십시오(전화: 360-725-6162, 우편주소: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7200).**

**이 자료를** [**OSPI – 특수 교육 – 절차상 보호방침**](http://www.k12.wa.us/SpecialEd/Families/Rights.aspx) **웹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로드하십시오. 본 자료는 요청에 따라 다른 판형으로도 제공됩니다. 자료 센터(Resource Center)에 888-595-3276번, TTY 360-664-363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더 신속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문서 번호: 19-0008를 참조하십시오.**

| 이미지 | 설명 |
| --- | --- |
| **OSPI Logo** | **Chris Reykdal** • 주 당국 감독관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ld Capitol Building •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7200 |